



제2859호 2022. 8. 26.(금)

www.jeonbuk.go.kr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2-1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전라북도 고시 제2022-198호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7
- 전라북도 고시 제2022-199호 성수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및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고시 · 10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0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14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1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15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2호 도좌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17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3호 도좌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8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4호 도좌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5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무주군) 22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6호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23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43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8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44호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9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14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공고 65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1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66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20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67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22호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업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68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26호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69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33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이리중앙늘봄) 72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40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73

시 군

- 전주시 고시 제2022-153호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평화3택지 제1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4
- 전주시 공고 제2022-2053호 도시계획시설(소공원:용머리여의주마을생태숲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열람공고 · 77
- 군산시 고시 제2022-1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79
- 군산시 공고 제2022-17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89)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80

- 정읍시 공고 제2022-11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보상계획 열람공고 82
- 남원시 공고 제2022-176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86
- 완주군 고시 제2022-67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88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고시 제2022-1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전라북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	시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m)
기정	지방도	708	신림~칠보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일원	17,081	입암면 봉양리 147-4	입암면 단곡리 845-2	-	784
변경	지방도	708	신림~칠보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일원	22,451	입암면 봉양리 147-4	입암면 단곡리 845-2	-	784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 선형 개량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2. 7. ~ '23. 12.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교통과(063-280-4403)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37)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708	노선명	신협~칠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정읍시 입암면 봉양리 656 ~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763-3 정읍시 입암면 봉양리 115-2 ~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771-2 - 범 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3. 「도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①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	12	집산도로	1,009	단곡리 산 67-4	단곡리 1107	일반도로		'75.5.13.	
변경	소로	3	2	12	집산도로	1,008	단곡리 371-2	단곡리 1107	일반도로		'75.5.13.	
신설	소로	2	439	9.5	국지도로	547	단곡리 769-4	봉양리 584	일반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3-2	중로3-2	• L=1,009m → 1,008m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연장 변경
-	소로2-439	• L=547m, B=9.5m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4.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실 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에서 열람 가능

【 불 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시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 계						115,161	17,081	22,451	증)5,370		
1	정읍	입암	봉양	147-2	도	112	112	112	0	단곡리 ***	박**
2	정읍	입암	봉양	147-4	도	619	619	619	0		전라북도
3	정읍	입암	봉양	148-1	도	169	161	161	0		전라북도
4	정읍	입암	봉양	117-1	도	3	3	3	0		전라북도
5	정읍	입암	봉양	117-2	도	225	225	225	0		전라북도
6	정읍	입암	봉양	117-4	도	35	35	35	0		전라북도
7	정읍	입암	봉양	112-2	도	145	145	145	0		전라북도
8	정읍	입암	봉양	112-3	도	139	139	139	0		전라북도
9	정읍	입암	봉양	113-1	도	1,075	1,075	1,075	0		전라북도
10	정읍	입암	봉양	113-2	답	661	0	110	증)110	정읍시 정읍북로 ***	고**
11	정읍	입암	봉양	113-3	전	1,078	0	21	증)21	경상북도 구미시 고마읍 문장로 ***	류**
12	정읍	입암	봉양	113-4	전	2,828	0	42	증)42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	유**
13	정읍	입암	봉양	115-2	잡	1,690	0	5	5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	고**
14	정읍	입암	봉양	110-2	도	172	172	172	0		전라북도
15	정읍	입암	봉양	110-3	도	2	2	2	0		전라북도
16	정읍	입암	봉양	111-2	도	26	26	26	0		전라북도
17	정읍	입암	봉양	111-3	도	77	77	77	0		전라북도
18	정읍	입암	봉양	산 109	임	4,798	71	368	증)297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	김**
19	정읍	입암	봉양	산 109-2	임	357	6	278	증)272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21길 ***	유**
20	정읍	입암	봉양	산 109-3	도	1,140	1,140	1,140	0		전라북도
21	정읍	입암	봉양	산 109-4	도	322	322	323	증)1		전라북도
22	정읍	입암	봉양	98-1	도	46	46	46	0	입암면 단곡리	류**
23	정읍	입암	봉양	98-2	도	3	3	3	0	입암면 단곡리	류**
24	정읍	입암	봉양	99-1	도	321	321	321	0	입암면 단곡리	류**
25	정읍	입암	봉양	99-2	전	900	0	180	증)180	단곡리 ***	김**
26	정읍	입암	봉양	99-3	전	5,415	0	20	증)20	고창 성내면 용교리 ***	이**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시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27	정읍	입암	봉양	99-4	도	353	353	353	0		전라북도
28	정읍	입암	봉양	100	전	1,290	0	365	증)365	서울 종로구 연건동 ***	박**
29	정읍	입암	봉양	100-1	도	82	81	81	0		전라북도
30	정읍	입암	봉양	101-1	전	175	0	175	증)175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	마**
31	정읍	입암	봉양	101-2	도	36	0	62	증)62	단곡리 ***	김**
32	정읍	입암	봉양	101-3	도	3	3	3	0		전라북도
33	정읍	입암	봉양	101-4	전	262	0	262	증)262		정읍시
34	정읍	입암	봉양	102-1	전	1,411	0	314	증)314	봉양리 ***	이**
35	정읍	입암	봉양	102-3	도	26	0	26	증)26		정읍시
36	정읍	입암	봉양	102-4	전	738	0	413	증)413		정읍시
37	정읍	입암	봉양	103	답	3,636	0	180	증)180	봉양리 ***	이**
38	정읍	입암	봉양	529-1	도	27	26	26	0		국(농림부)
39	정읍	입암	봉양	530	도	618	0	270	증)270		국(건설부)
40	정읍	입암	봉양	530-1	도	543	543	543	0		국 (건설교통부)
41	정읍	입암	봉양	530-2	도	39	0	4	증)4		국 (건설교통부)
42	정읍	입암	봉양	533-1	도	7,435	1,810	1,810	0		국 (건설교통부)
43	정읍	입암	봉양	656	구	24,176	4	4	0		국 (농림수산부)
44	정읍	입암	봉양	산 110-2	임	9,421	8	56	증)48	고창군 성내면 용교리 ***	이**
45	정읍	입암	봉양	산 111	임	1,487	133	233	증)100	고창군 성내면 용교리 ***	이**
46	정읍	입암	봉양	산 111-1	도	496	496	496	0		전라북도
47	정읍	입암	봉양	산 112-1	도	240	4	112	증)108		전라북도
48	정읍	입암	봉양	산 112-2	임	216	0	30	증)30		정읍시
49	정읍	입암	봉양	산 113-1	임	523	0	35	증)35		정읍시
50	정읍	입암	봉양	산 121	도	198	84	126	증)42		국 (건설교통부)
51	정읍	입암	단곡	산 78-1	도	25	25	25	0		전라북도
52	정읍	입암	단곡	산 79	임	1,318	119	390	증)271	단곡리 ***	이**
53	정읍	입암	단곡	산 79-1	도	368	368	368	0		전라북도
54	정읍	입암	단곡	산 162	도	298	298	298	0		국 (건설교통부)
55	정읍	입암	단곡	767-1	도	7	7	7	0		전라북도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시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56	정읍	입암	단곡	767-2	도	60	60	60	0		전라북도
57	정읍	입암	단곡	767-3	전	343	0	128	증)128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	이**
58	정읍	입암	단곡	767-4	도	47	47	47	0		전라북도
59	정읍	입암	단곡	769-1	도	76	76	76	0		전라북도
60	정읍	입암	단곡	769-2	답	1,304	0	177	증)177	단곡리 ***	김**
61	정읍	입암	단곡	769-3	도	26	26	26	0	정주읍 상리 ***	황**
62	정읍	입암	단곡	769-4	도	438	438	438	0		전라북도
63	정읍	입암	단곡	769-5	답	1,914	0	584	증)584	정주시 시기동 ***	이**
64	정읍	입암	단곡	763-2	도	340	340	340	0		전라북도
65	정읍	입암	단곡	763-4	도	6	6	6	0		전라북도
66	정읍	입암	단곡	763-5	목	7,898	4	4	0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밭고개로 ***	김**
67	정읍	입암	단곡	764-2	도	89	89	89	0		전라북도
68	정읍	입암	단곡	764-3	도	7	7	7	0		전라북도
69	정읍	입암	단곡	765-3	도	48	48	48	0		전라북도
70	정읍	입암	단곡	766-3	도	70	70	70	0		전라북도
71	정읍	입암	단곡	770	도	10	10	10	0		전라북도
72	정읍	입암	단곡	771-1	도	23	23	23	0	정읍군 입암면 단곡리 ***	오**
73	정읍	입암	단곡	771-2	답	2,784	0	592	증)592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1길 ***	유**
74	정읍	입암	단곡	771-3	도	439	439	439	0		전라북도
75	정읍	입암	단곡	790-1	도	83	83	83	0		전라북도
76	정읍	입암	단곡	790-2	답	146	0	113	증)113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	정**
77	정읍	입암	단곡	790-3	도	39	39	39	0		전라북도
78	정읍	입암	단곡	773-2	도	73	73	73	0		전라북도
79	정읍	입암	단곡	773-3	도	70	70	70	0		전라북도
80	정읍	입암	단곡	774-2	도	60	60	60	0	-	류**
81	정읍	입암	단곡	774-3	도	2	2	2	0	단곡리 ***	안**
82	정읍	입암	단곡	772-2	도	86	86	86	0		전라북도
83	정읍	입암	단곡	772-3	도	95	95	95	0		전라북도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시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84	정읍	입암	단곡	787-2	도	16	16	16	0		전라북도
85	정읍	입암	단곡	788-2	도	397	397	397	0		전라북도
86	정읍	입암	단곡	788-4	도	317	317	317	0		전라북도
87	정읍	입암	단곡	788-5	도	276	276	276	0		전라북도
88	정읍	입암	단곡	789-1	도	3	3	3	0	단곡리 ***	백**
89	정읍	입암	단곡	791-1	도	66	66	66	0		전라북도
90	정읍	입암	단곡	793-3	도	73	73	73	0		전라북도
91	정읍	입암	단곡	793-4	도	7	7	7	0		전라북도
92	정읍	입암	단곡	842-1	도	270	270	270	0		전라북도
93	정읍	입암	단곡	843-3	도	195	195	195	0		전라북도
94	정읍	입암	단곡	843-5	도	123	123	123	0		전라북도
95	정읍	입암	단곡	845-2	도	60	60	60	0	신정리 ***	이**
96	정읍	입암	단곡	845-3	도	139	139	139	0	단곡리 ***	류**
97	정읍	입암	단곡	845-4	도	50	50	50	0		전라북도
98	정읍	입암	단곡	845-8	도	175	99	99	0		전라북도
99	정읍	입암	단곡	1107	도	16,776	3,033	3,033	0		국 (건설교통부)
100	정읍	입암	단곡	1302	구	852	704	704	0		국(농림부)
101	정읍	입암	단곡	1303	도	985	0	123	증)123		국(농림부)

전라북도 고시 제2022-198호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8월 26일

1. 고시명 :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비고
1	기념물	150	진안 대량리 제동 유적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103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향검토를 생략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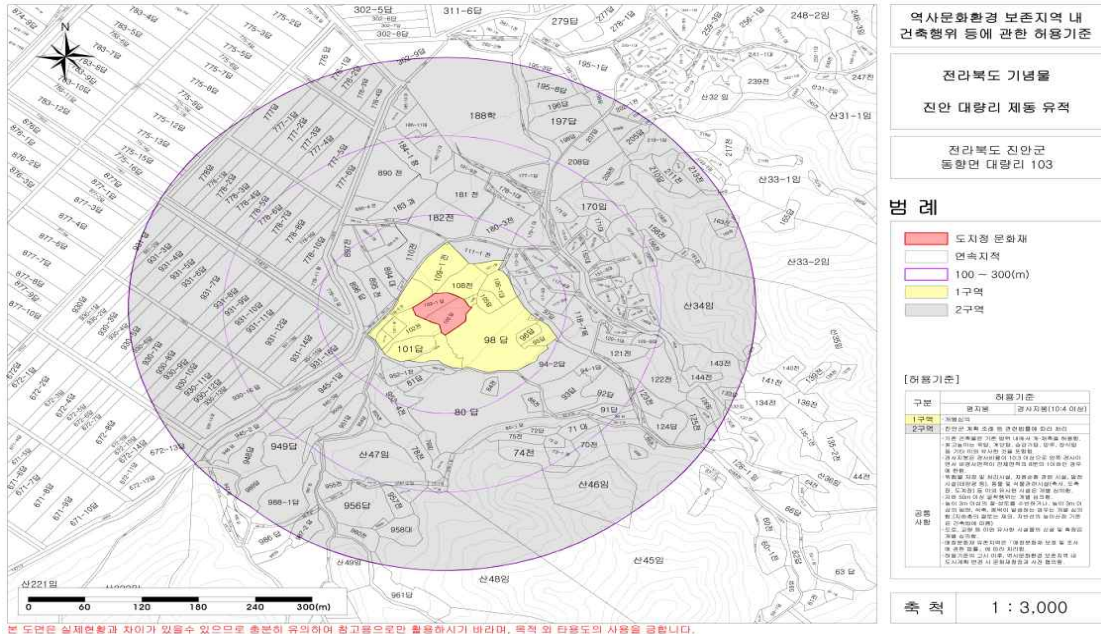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도정정보-행정정보-알림마당
 - 공고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문화재보존관리지도 참조

3.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4. 연 락 처

- 가.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63)280-3315
- 나. 진 안 군 문화체육과 전화 (063)430-2383

진안 대량리 제동 유적(기념물 제150호)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4이상)
1구역	· 개별십의	
2구역	· 진안군 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4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전라북도 고시 제2022-199호

성수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및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성수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및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을 고시합니다.

2022. 8. 26.

전라북도지사

1. 승인내역

구분	자연휴양림(변경)	숲속야영장(신규)	비고
위치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산81의 34필지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60외 2필지	3필지 중첩
면적	1,350,000㎡/1991. 5. 15. 지정고시	6,243㎡	
전용등	(당초) (변경) 산지전용 779→1,246.19(증467.19) 건축면적 496→963.19(증467.19)	산지전용 및 건축 467.19㎡	
사업비	당초 5,000백만원 변경 8,000백만원(증 3,000)	3,000백만원	
변경 및 주요시설	숲속야영장 신규 조성, 시설물 종류 재분류, 노후시설 철거 등	야영장, 숲속의집, 주차장, 야영지원센터, 산책로 등	

2. 시설계획**(자연휴양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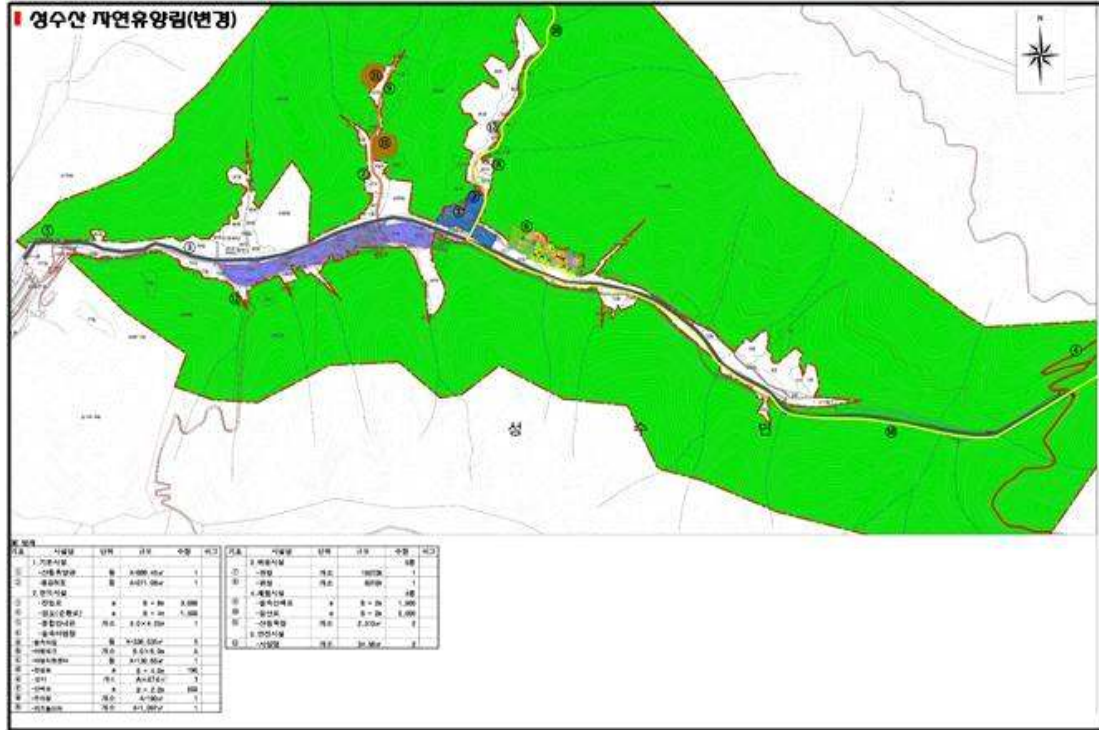
시 설 명	단위	규모	수량	형질변경면적(㎡)	건축면적(㎡)	비고
합 계	㎡	-		1,246.19	963.19	
소 계				779	496	
숙박 시설	산림휴양관	동	A=889.45㎡	1	469	319
	평강의집	동	A=271.08㎡	1	310	177
소 계		-		467.19	467.19	
편의 시설	진입로	M	B=80m	2,500		
	임도(순환로)	M	B=40m	1,500		

시 설 명		단위	규모	수량	형질변경면적 (㎡)	건축면적(㎡)	비 고
	종합안내판	개소	30x4.25m	1			
	벤치	개	3종	40			
	가로등	개소	50x0.6m	10			
	숲속야영장				467.19	467.19	추가
	- 숲속의집		A=336.535㎡	5	336.54	336.54	추가
	- 야영데크	개	60*60	5			추가
	- 야영지원센터		A=130.65	1	130.65	130.65	추가
	- 진입로	M	B=40m	780			추가
	- 쉼터		474㎡	1			추가
	- 산책로	M	B=20m	550			추가
	- 주차장		190㎡	1			추가
	- 키즈놀이터	개소	A=1,097	1			추가
소 계							
위생 시설	관정	개소	100ton	1			
	관정	개소	60ton	1			
소 계							
체협 시설	숲속산책로	M	B=20m	1,000			
	등산로	M	B=20m	2,000			
	산림욕장	개소	2310㎡	2			
소 계							
안전 시설	사방댐	개소	34.5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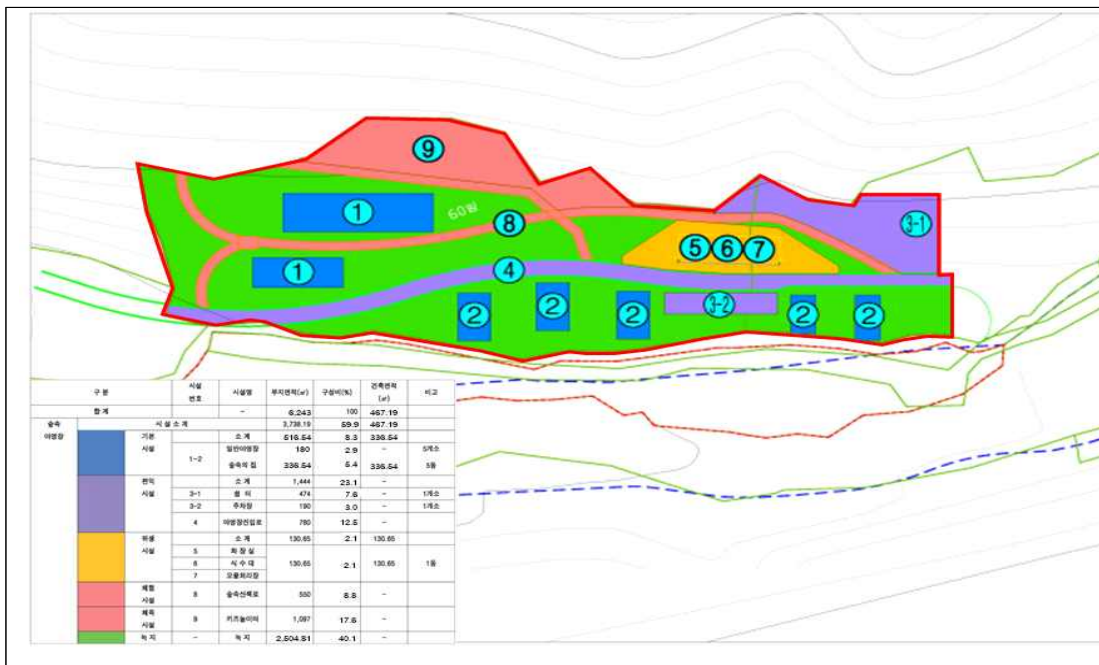
(숲속야영장)

구분	위치	시설명	단위	규모	수량	시설 면적(m ²)	형질변경 면적(m ²)	건축 면적(m ²)	비고
총계						3,738.19m ²	467.19m ²	467.19m ²	
기본 시설	성수리 산60의 1필지	일반야영장 (야영테크)	개	6.0×6.0	5	180m ²	-	-	
		숲속의 집	동	단층	5	336.54m ²	336.54	336.54m ²	
		소계			10	516.54m ²	336.54m ²	336.54m ²	
편의 시설	성수리 산60의 2필지	주차장	개	A=190m ²	1	190m ²	-	-	
		야영장진입로	개	L=195m, B=3.0~4.0m	1	780m ²	-	-	
		쉼터	개	A=474m ²	1	474m ²			
		소계			3	1,444m ²	-	-	
위생 시설	성수리 산60	야영지원센터	동	단층	1	130.65m ²	130.65m ²	130.65m ²	
		소계			1	130.65m ²	130.65m ²	130.65m ²	
체험 시설	성수리 산60의 2필지	숲속산책로	개	L=275m, B=2.0m	2	550m ²	-	-	
		소계			2	550m ²	-	-	
체육 시설	성수리 산60의 2필지	키즈놀이터	개	A=1,097m ²	1	1,097m ²	-	-	
		소계			1	1,097m ²	-	-	
전기 통신 시설	성수리 산60의 2필지	전기시설	-	내선, 외선	-	-	-	-	
		방송음향시설	-	1식	-	-	-	-	
		소계	-		-	-	-	-	
안전 시설	성수리 산60의 2필지	보안등	개	H=3.9m	10	-	-	-	
		소화기	개	1식	20	-	-	-	
		석축	m	L=246m	246	-	-	-	
		소계	-		-	-	-	-	

3. 시설물 종합배치도
3-1 성수산 자연휴양림



3-2 성수산 숲속야영장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0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부안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부안군 농지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8월 26일

1.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면적

(단위 : ha)

구 분	농업진흥지역			비 고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전라북도	135,876.7	117,464.6	18,412.1	- 진흥 : △0.7	- 보호 :
부안군	15,084.4	13,357.9	1,726.5	- 진흥 : △0.7	- 보호 :

※ 지형도면 : 실음생략

2. 해제 사유

- 부안 군계획시설(광장) 실시계획 인가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2371-15번지 일원)
-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7,477.6m² 해제

3. 농업진흥지역 도면(1/5,000) 및 토지조서는 부안군에 보관한다.

4.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한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1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결정도서를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8월 26일
전라북도지사

1.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52,810,000	-	752,810,000	100.00	-	
도 시 지 역	30,647,473	-	30,647,473	4.07	-	
주거지 역	소 계	6,433,690	-	6,433,690	0.86	-
	제1종일반주거지역	827,654	-	827,654	0.11	-
	제2종일반주거지역	5,586,279	-	5,586,279	0.74	-
	준주거지역	20,757	-	20,757	0.01	-
상업지 역	소 계	979,006	-	979,006	0.13	-
	일반상업지역	958,852	-	958,852	0.12	-
	유통상업지역	20,154	-	20,154	0.01	-
공업지 역	소 계	1,835,590	-	1,835,590	0.24	-
	일반공업지역	1,835,590	-	1,835,590	0.24	-
녹지지 역	소 계	21,398,187	-	21,398,187	2.84	-
	자연녹지지역	978,061	-	978,061	0.13	-
	생산녹지지역	20,420,126	-	20,420,126	2.71	-
도 시 외 지 역	722,162,527	-	722,162,527	95.93	-	
관리지 역	소 계	276,386,166	-	276,386,166	36.71	-
	미 세 분	1,119,956	-	1,119,956	0.15	-
	보전관리지역	78,742,729	-	78,742,729	10.46	-
	생산관리지역	66,763,743	-	66,763,743	8.87	-
	계획관리지역	129,759,738	증)59,790	129,819,528	17.24	-
	농림지역	337,782,009	감)59,790	337,722,219	44.86	-
자연환경보전지역	107,994,352	-	107,994,352	14.35	-	

* 기정은 전라북도 고시 제2022-90호(2022.05.20) 기준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남원 44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449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59,790	100% 이하	LX드론활용센터 건립을 위해 당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계도서 : “실음생략”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2호

도좌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도좌천의 하천구간을 지정(변경)하고 「하천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8월 26일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구분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의 구간								하천 연장 (km)	결정 (변경)일
			기 점				종 점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기수립	도좌천	지방	전북	장수	송천	송천리 371-3번지선	전북	장수	무농	무농리 나치천(지방)합류점	1.37	2014.03.07. (전북 제2014-53호)
변경			전북	장수	송천	송천리 371-1번지선	전북	장수	무농	무농리 816번지선 나치천(지방)합류점	1.36	2022.08.26

2. 지정(변경) 사유

하천의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구간의 조사 및 측량 결과에 따른 지정(변경)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3호

도좌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수립한 「도좌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8월 26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금강	도좌천	지방	전북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136번지선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나치천(지방)합류점	2.00	전북260호 (1982.10.11.)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1-3번지선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나치천(지방)합류점	1.37	전라북도 고시 제2014-53호 (2014.03.07.)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1-1번지선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816번지선 나치천(지방)합류점	1.36	재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수자원 총량 (백만m ³)	기 준 갈수량 (m ³ /s)	저수량 (m ³ /s)	유출량(백만m ³)			손실량 (백만m ³)
					홍수기	평상시	계	
도좌천	1.68	2.49	0.058	0.002	1.09	0.36	1.45	1.04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도좌천	1.36	1.36	-	2.72	-	2.72	-	

주) 하천정비현황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수립연장의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유료 연장 (km)	기 본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유역분담	
도좌천	과업 종점부 (No.0+000)	1.68	50	2.45	26	26	-	-
	제4BOX교 지점 (No.0+402)	1.60	50	2.07	26	26	-	-
	싸리목골 합류전 (No.1+195)	0.76	50	1.38	6	6	-	-
	과업 시점부 (No.1+362)	0.26	50	1.09	4	5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계획 규모 (년)	하폭 (m)		기설제방고 (EL.m)		비 고
						현재	계획	좌안	우안	
도좌천	0+000	0	26	346.14	50	5	12	347.46	347.46	과업 종점부
	0+402	402	26	349.70	50	3	12	350.62	350.62	제4BOX교 지점
	1+195	1,195	6	357.78	50	3	8	359.04	359.04	싸리목골 합류전
	1+362	1,362	5	360.29	50	1	3	360.54	360.65	과업 시점부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 ²)
도좌천	0+000~0+409	좌안	복원지구	0.41	3,538
	0+000~0+409	우안	복원지구	0.41	5,293
	0+409~1+004	좌안	복원지구	0.60	6,982
	0+409~1+004	우안	복원지구	0.60	6,100
	1+004~1+362	좌안	복원지구	0.35	3,053
	1+004~1+362	우안	복원지구	0.35	3,894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공향하천과 또는 장수군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4호

도좌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공항하천과), 장수군(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8월 26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도좌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일 : 2022. 8. 26
3. 지정 사유 :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m ²)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도좌천	6개 지구(좌안 - 3개 지구, 우안 - 3개 지구)		2.72	28,860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712-1번지선 (No.0+409)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455-2번지선 (No.0+000)	0.41	3,538	기본계획 수 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864번지선 (No.1+004)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712-1번지선 (No.0+409)	0.60	6,982	기본계획 수 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1-1번지 (No.1+362)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864번지선 (No.1+004)	0.35	3,053	기본계획 수 립
	좌안부 소계		1.36	13,573	3지구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712-1번지선 (No.0+409)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816번지선 (No.0+000)	0.41	5,293	기본계획 수 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882번지선 (No.1+004)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712-1번지선 (No.0+409)	0.60	6,100	기본계획 수 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6-2번지선 일원 (No.1+362)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882번지선 (No.1+004)	0.35	3,894	기본계획 수 립
	우안부 소계		1.36	15,287	3지구

-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5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무주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8월 26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무주군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2	무주군	하유지구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458-1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무주군	하유지구	371	206,384	380	203,928	9 (2.4%)	△2,456 (-1.2%)	

- ⑤ 변경사유 : 필지 분할(지구계측량)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무주군청 박송이(063-320-2720)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6호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8월 26일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칭 :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완주군의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육성, 지역산업 고도화 촉진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일원
 - 면적 : 1,311,398.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단지조성 : 2009년 ~ 2015년 2월
(변경) 금회사업시행분 : 고시일로부터 ~ 2024년 12월
 - 개발방법 : (기정) 공영개발
(변경)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1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1차 금속(24), 금속가공제품(25), 기타 기계 및 장비(29),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35), 창고 및 운송관련(52), 연구개발업(70)
 - *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전라북도 고시 2017-100호) 기준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기정)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변경)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68
- 시행자 : (기정) 완주군수
(변경) (주)뷰텍모터스 대표 나성환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비 율(%)	비 고
합 계	1,311,398.7	100.00	
산업시설용지	970,585.3	74.01	
산업시설용지	903,209.4	68.87	
연구시설용지	67,375.9	5.14	
공공시설용지	340,813.4	25.99	
도 로	200,404.7	15.28	
주차장	8,107.0	0.62	
저류지	12,430.0	0.95	
공원녹지	119,871.7	9.14	
공 원	47,441.3	3.62	
완충녹지	33,415.5	2.55	
경관녹지	19,193.9	1.46	
연결녹지	19,821.0	1.5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 결정 조서

○ 도로시설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1	7,182	200,404.7	8	3,176	70,130.4	1	2,407	85,631.7	2	1,599	44,642.6
대로	3	4,006	130,274.3	-	-	-	1	2,407	85,631.7	2	1,599	44,642.6
중로	6	2,971	67,958.3	6	2,971	67,958.3	-	-	-	-	-	-
소로	2	205	2,172.1	2	205	2,172.1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4.5	주간선 도로	2,407	대로1-1	중로1-9	일반 도로	-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대로	3	5	27.5	주간선 도로	1,152	중로1-19	테크노밸리 완충녹지18	일반 도로	-		
기정	대로	3	6	27.5	주간선 도로	447	대로2-1	대로3-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9	20~23	보조간선도로	692 (224)	대로3-3	중로1-1	일반 도로	-	전북도고시 제1995-75호 (95.05.08)	
기정	중로	1	14	22	보조간선도로	173	대로2-1	테크노밸리 완충녹지18	일반 도로	-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중로	1	15	22	보조간선도로	1,158	대로2-1	대로3-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16	22	보조간선도로	446	대로2-1	대로3-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17	22	보조간선도로	340	대로3-5	중로1-1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18	22	보조간선도로	630	대로2-1	대로3-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26	10	특수 도로	105	대로2-1	테크노밸리 서측지구계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27	10	국지 도로	100	중로1-15	테크노밸리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		

()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내

2)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8,107.0	-	8,107.0		
기정	7	주차장 (노외주차장)	봉동읍 장구리 599번지 일원	2,371.2	-	2,371.2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8	주차장 (노외주차장)	봉동읍 장구리 584-6번지 일원	2,210.8	-	2,210.8		
기정	9	주차장 (노외주차장)	봉동읍 장구리 585-3번지 일원	3,525.0	-	3,525.0		

3)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47,441.3	-	47,441.3		
기정	11	테크노밸리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봉동읍 장구리 602번지	20,598.5	-	20,598.5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12	테크노밸리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봉동읍 장구리 582-11번지	17,747.7	-	17,747.7		
기정	13	테크노밸리 소공원	소공원	봉동읍 장구리 600번지 일원	9,095.1	-	9,095.1		

4) 녹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72,430.4	-	72,430.4		
기정	17	녹지	완충 녹지	봉동읍 장구리 590-1번지 일원	8,328.2	-	8,328.2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18	녹지	완충 녹지	봉동읍 장구리 588번지 일원	6,867.6	-	6,867.6		
기정	19	녹지	완충 녹지	봉동읍 장구리 601번지 일원	5,610.4	-	5,610.4		
기정	20	녹지	완충 녹지	봉동읍 장구리 603번지 일원	12,609.3	-	12,609.3		
기정	21	녹지	경관 녹지	봉동읍 장구리 589-1번지 일원	19,193.9	-	19,193.9		
기정	22	녹지	연결 녹지	봉동읍 장구리 609번지 일원	9,468.3	-	9,468.3		
기정	23	녹지	연결 녹지	봉동읍 장구리 591번지 일원	6,485.9	-	6,485.9		
기정	24	녹지	연결 녹지	봉동읍 장구리 575-4번지 일원	2,483.4	-	2,483.4		
기정	25	녹지	연결 녹지	봉동읍 장구리 577-3번지 일원	1,383.4	-	1,383.4		

5)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중 점	주요 경과지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2.1		11,543.9	-	11,543.9		
기정	1	장구천	소하천	봉동읍 장구리 590-2	장구리 605 (석탑천)	테크노밸리	1.7	3.6 ~ 29	8,672.1	-	8,672.1	전북도 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2	만동천	소하천	봉동읍 장구리 601	장구리 602 (석탑천)	테크노밸리	0.4	3.6 ~ 8.5	2,871.8	-	2,871.8		

* 당초 기정면적 합계 11,544.9㎡ → 11,543.9㎡로 오류 정정

6)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봉동읍 장구리 607번지	12,430	-	12,430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다. 공급처리계획(변경)

1) 용수공급계획(변경)

- 공업용수는 완주산업단지 정수장내 공업용수 배수지에서 공급할 계획
- 생활용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 완주산업단지 정수장내 생활용수 배수지에서 공급할 계획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관로를 통해 신설 가압펌프를 이용하여 각 시설용지로 공급계획

공업용수 공급계획

구 분	면 적(m ²)		원 단 위 (m ³ /천m ² /일)	용 수 량(m ³ /일)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 계	903,209.4	903,209.4	-	4,305	4,39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129.3	18,129.3	3.22	58	5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8,544.0	9.82	-	8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9,936.0	4.64	-	46	
1차 금속	-	12,453.9	3.66	-	46	
금속가공제품	315,357.8	315,357.8	6.47	2,040	2,040	
기타 기계 및 장비	149,332.8	140,788.8	4.95	739	697	
자동차 및 트레일러	361,037.5	307,343.9	3.59	1,296	1,10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	17,090.6	6.24	-	107	
창고 및 운송관련	59,352.0	73,565.1	2.89	172	213	

생활용수 공급계획

구 분	인 구(인)		원 단 위 (L/인/일)	용 수 량(m ³ /일)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6,985	7,727	-	693	775		
상근 인구	소 계	5,988	6,730	-	659	740	
	산업용지	3,987	4,728	110.0	439	520	
	연구시설	2,001	2,002	110.0	220	220	
이용 인구	소 계	997	997	-	34	35	
	산업용지	938	938	35	32	33	
	연구시설	59	59	35	2	2	

2)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는 기존 과학산단 중계펌프장까지 오수관로를 통해 삼례중계펌프장을 거쳐 삼례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전량 처리

공장폐수 처리계획

구 분	일최대용수량 (m ³ /일)		폐수 화율 (%)	폐수량 (m ³ /일)		지하수유입량 (m ³ /일)		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 계	4,305	4,394		1,260	1,452	126	145	1,386	1,59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8	58	91.76	53	5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84	85.88	-	7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46	85.88	-	40				
1차 금속	-	46	43.17	-	20				
금속가공제품	2,040	2,040	43.17	881	881				
기타 기계 및 장비	739	697	43.17	319	3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96	1,103	0.42	5	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	107	75.17	-	80				
창고 및 운송관련	172	213	0.42	1	1				

생활오수 처리계획

구 분	일최대용수량 (m ³ /일)		유효수율 (%)	오수 전환율 (%)	생활오수량 (m ³ /일)		지하수유입량 (m ³ /일)		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 계	693	775			499	558	46	56	545	614
산업시설	471	553	80.0	90.0	339	398				
연구시설	222	222	80.0	90.0	160	160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 사업비 총괄

구 분	금액(억원)	구성비(%)	비 고	
계	1,500	100.00		
용지비	소 계	840	56.0	
	토지보상비	625	41.7	
	지장물보상비	215	14.3	
조성비	소 계	570	38.0	
	단지조성비	570	38.0	
기타비용	90	6.0		

2)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금액(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계	1,500	20	210	700	570
용지비	840	-	205	635	-
조성비	570	-	-	55	515
기타비용	90	20	5	10	55

9.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전력수요는 유치시설별로 업종별 전력원단위를 근거로 추정하고, 연구시설 및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시설별 부하밀도를 적용하여 산정
- 계획대상지 총 전력소요량은 271,395MWH/년, 설비용량은 70,018KVA, 최대부하는 56,899KW으로 전망
- 본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은 한국전력 봉동변전소에서 공급계획임.

계획대상지 총전력 소요량 추정

구 분	전력소요량 (MWH/년)	설비용량 (KVA)	최대부하 (KW)	비고
계	271,395	70,018	56,899	
산업시설용지	228,074	58,332	45,798	
기타시설용지	43,321	11,686	11,101	

주) 기타시설용지: 최대부하 = 설비용량 × 역율(0.9)

2) 도시가스공급계획

- 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의 공정열 353,538Gcal/년, 연구시설의 난방/급탕/냉방용 열수요량은 11,097Gcal/년, 취사용 3,257Gcal/년으로 총 367,892Gcal/년 예측됨
- 본 산업단지의 도시가스공급은 전북도시가스(주)에서 공급할 계획임

구 분	열 수 요 (Gcal/년)					비고
	공 정 열		난방/급탕	냉방용	취사용	
	직접열	간접열				
산업시설	232,707	120,831	-	-	-	
연구시설	-	-	7,241	3,856	3,257	
합 계	232,707	120,831	7,241	3,856	3,257	
	353,538					

3)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 본 산업단지는 태양열온수기 1,200m², 태양광발전 25KW, 지열이용 히트펌프 750RT, 전체 548toe/년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 계획할 계획임.

구 분	태양열에너지		지열이용 히트펌프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	
용도별도입시설	산업시설 연구시설	연구시설	연구시설
설치용량	산업시설 : 20m ² × 55 연구시설 : 20m ² × 5 전체용량 : 1,200m ²	연구시설 : 5kW × 5 전체용량 : 25kW	연구시설 : 150RT×5 전체용량 : 750RT
설치단가	1,030천원/m ²	7,180천원/kw	4,430천원/RT
신재생에너지 도입효과	77toe/년	7toe/년	464toe/년
	548toe/년(총 에너지사용량 66,534toe/년의 0.82%)		

10. 유치업종 배치계획, 업종별 공급면적

1) 유치업종배치계획 및 업종별 공급면적(변경)

구 분	면 적(m ²)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70,585.3	-	970,585.3	100.00	
산업시설용지	903,209.4	-	903,209.4	93.0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8,129.3	-	18,129.3	1.8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8,544.0	-	8,544.0	0.8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936.0	-	9,936.0	1.02	
1차 금속	12,453.9	-	12,453.9	1.28	
금속가공제품	315,357.8	-	315,357.8	32.49	
기타 기계 및 장비	140,788.8	-	140,788.8	14.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321,557.0	감)14,213.1	307,343.9	31.6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17,090.6	-	17,090.6	1.76	
창고 및 운송관련	59,352.0	증)14,213.1	73,565.1	7.58	
연구개발업	67,375.9	-	67,375.9	6.94	

11.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업 지역	소 계	1,311,398.7	-	1,311,398.7	-	
	일반공업지역	1,311,398.7	-	1,311,398.7	100.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일원	1,311,398.7	-	1,311,398.7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11,398.7	-	1,311,398.7	100.00	
산업시설용지		970,585.3	-	970,585.3	74.01	
	산업시설용지	903,209.4	-	903,209.4	68.87	
	연구시설용지	67,375.9	-	67,375.9	5.14	
공공시설용지		340,813.4	-	340,813.4	25.99	
	도 로	200,404.7	-	200,404.7	15.28	
	주차장	8,107.0	-	8,107.0	0.62	
	저류지	12,430.0	-	12,430.0	0.95	
공원녹지		119,871.7	-	119,871.7	9.14	
	공 원	47,441.3	-	47,441.3	3.62	
	완충녹지	33,415.5	-	33,415.5	2.55	
	경관녹지	19,193.9	-	19,193.9	1.46	
	연결녹지	19,821.0	-	19,821.0	1.51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 m, m²)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1	7,182	200,404.7	8	3,176	70,130.4	1	2,407	85,631.7	2	1,599	44,642.6
대로	3	4,006	130,274.3	-	-	-	1	2,407	85,631.7	2	1,599	44,642.6
중로	6	2,971	67,958.3	6	2,971	67,958.3	-	-	-	-	-	-
소로	2	205	2,172.1	2	205	2,172.1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4.5	주간선 도로	2,407	대로1-1	중로1-9	일반 도로	-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대로	3	5	27.5	주간선 도로	1,152	중로1-19	테크노벨리 완충녹지18	일반 도로	-		
기정	대로	3	6	27.5	주간선 도로	447	대로2-1	대로3-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9	20~23	보조 간선도로	224	대로3-3	중로1-1	일반 도로	-	전북도고시 제95-75호 (95.05.08)	
기정	중로	1	14	22	보조 간선도로	173	대로2-1	테크노벨리 완충녹지18	일반 도로	-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중로	1	15	22	보조 간선도로	1,158	대로2-1	대로3-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16	22	보조 간선도로	446	대로2-1	대로3-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17	22	보조 간선도로	340	대로3-5	중로1-1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18	22	보조 간선도로	630	대로2-1	대로3-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26	10	특수도로	105	대로2-1	테크노벨리 서측지구계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27	10	국지도로	100	중로1-15	테크노벨리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8,107.0	-	8,107.0		
기정	7	주차장 (노외주차장)	봉동읍 장구리 599번지	2,371.2	-	2,371.2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8	주차장 (노외주차장)	봉동읍 장구리 584-6번지	2,210.8	-	2,210.8		
기정	9	주차장 (노외주차장)	봉동읍 장구리 585-3번지	3,525.0	-	3,525.0		

다)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47,441.3	-	47,441.3		
기정	11	테크노밸리 제1호근린공원	근린 공원	봉동읍 장구리 602번지	20,598.5	-	20,598.5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12	테크노밸리 제2호근린공원	근린 공원	봉동읍 장구리 582-11번지	17,747.7	-	17,747.7		
기정	13	테크노밸리 소공원	소공원	봉동읍 장구리 600번지	9,095.1	-	9,095.1		

① 테크노밸리 제1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598.5	-	20,598.5	100.0	
도로 및 광장	880	-	880	4.3	도로(2개노선)
조경시설	720	-	720	3.5	관목향기원
휴양시설	380	-	380	1.9	휴게광장
녹 지	18,618.5	-	18,618.5	90.3	-

○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	-	-	20,598.5	-	20,598.5	-	-	
도로 및 광장	소 계		-	880	-	880	-	-	
	-	도로	-	880	-	880	-	-	2개노선
조 경 시설	소 계		-	720	-	720	-	-	
	1	관목향기원	장구리 602	720	-	720	-	-	
휴 양 시설	소 계		-	380	-	380	-	-	
	2	휴게광장	장구리 602	380	-	380	-	-	
녹 지	소 계		-	18,618.5	-	18,618.5	-	-	
	-	녹지	-	18,618.5	-	18,618.5	-	-	

○ 공원조성계획 도로 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440	880				
기정	소로	3	1	2	112	224	산책로	장구리 602	장구리 602	
기정	소로	3	2	2	328	656	산책로	장구리 602	장구리 602	

② 테크노밸리 제2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747.7	-	17,747.7	100.0	
도로 및 광장	618	-	618	3.5	도로(1개노선)
휴양시설	152	-	152	0.8	휴게광장(1개소)
녹 지	16,977.7	-	16,977.7	95.7	-

○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	-	-	17,747.7	-	17,747.7	-	-	
도로 및 광장	소 계		-	618	-	618	-	-	
	-	도로	-	618	-	618	-	-	1개노선
휴 양 시설	소 계		-	152	-	152	-	-	
	1	휴게광장	장구리 582-11	152	-	152	-	-	
녹 지	소 계		-	16,977.7	-	16,977.7	-	-	
	-	녹지	-	16,977.7	-	16,977.7	-	-	

○ 공원조성계획 도로 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2	309	618	산책로	장구리 582-11	장구리 582-11	

③ 테크노밸리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095.1	-	9,095.1	100.0	
도로 및 광장	960	-	960	10.5	도로(2개노선), 진입광장
조경시설	2,006	-	2,006	22.1	잔디광장
녹 지	6,129.1	-	6,129.1	67.4	-

○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바닥면 적	연면적	
합 계	-	-	-	9,095.1	-	9,095.1	-	-	
도로 및 광장	소 계		-	960	-	960	-	-	
	-	도로	-	340	-	340	-	-	2개노선
	1	진입광장	장구리 600	620		620			
조 경 시 설	소 계		-	2,006	-	2,006	-	-	
	2	잔디광장	장구리 600	2,006	-	2,006	-	-	
녹 지	소 계		-	6,129.1	-	6,129.1	-	-	
	-	녹지	-	6,129.1	-	6,129.1	-	-	

○ 공원조성계획 도로 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70	340				
기정	소로	3	1	2	36	72	산책로	장구리 600	장구리 600	
기정	소로	3	2	2	134	268	산책로	장구리 600	장구리 600	

라)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72,430.4	-	72,430.4		
기정	17	녹지	완충 녹지	봉동읍 장구리 590-1번지 일원	8,328.2	-	8,328.2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18	녹지	완충 녹지	봉동읍 장구리 588번지	6,867.6	-	6,867.6		
기정	19	녹지	완충 녹지	봉동읍 장구리 601번지	5,610.4	-	5,610.4		
기정	20	녹지	완충 녹지	봉동읍 장구리 603번지 일원	12,609.3	-	12,609.3		
기정	21	녹지	경관 녹지	봉동읍 장구리 589-1번지 일원	19,193.9	-	19,193.9		
기정	22	녹지	연결 녹지	봉동읍 장구리 609번지 일원	9,468.3	-	9,468.3		
기정	23	녹지	연결 녹지	봉동읍 장구리 591번지	6,485.9	-	6,485.9		
기정	24	녹지	연결 녹지	봉동읍 장구리 575-4번지 일원	2,483.4	-	2,483.4		
기정	25	녹지	연결 녹지	봉동읍 장구리 577-3번지	1,383.4	-	1,383.4		

마)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2.1		11,543.9	-	11,543.9		
기정	1	장구천	소하천	봉동읍 장구리 590-2	봉동읍 장구리 605 (석탑천)	테크노 밸리	1.7	3.6 ~ 29	8,672.1	-	8,672.1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기정	2	만동천	소하천	봉동읍 장구리 601	봉동읍 장구리 602 (석탑천)	테크노 밸리	0.4	3.6 ~ 8.5	2,871.8	-	2,871.8		

* 당초 기정면적 합계 11,544.9m² → 11,543.9m²로 오류 정정

바)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봉동읍 장구리 607번지	12,430	-	12,430	전북도고시 제2010-352호 (10.12.31)	

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m ²)	번호	위치	면적(m ²)	
산1	17,288.6	1	장구리 575-1번지	8,340.0	산업단지의 탄력적인 용지공급 및 분양을 위하여 획지분할 가능 (최소획지규모 : 3,000m ² 이상)
		2	장구리 575-2번지	4,550.2	
		3	장구리 575-3번지	4,398.4	
산2	18,129.3	1	장구리 576-1번지	18,129.3	
산3	108,437.1	1	장구리 581-1번지	10,713.4	
		2	장구리 581-2번지	10,823.9	
		3	장구리 581-3번지	10,823.0	
		4	장구리 581-4번지	10,822.5	
		5	장구리 581-5번지	10,480.4	
		6	장구리 581-6번지	10,707.2	
		7	장구리 581-7번지	11,050.2	
		8	장구리 581-8번지	11,050.6	
		9	장구리 581-9번지	11,051.1	
		10	장구리 581-10번지	10,914.8	
산4	59,352.0	1	장구리 577-1번지	44,758.4	
		2	장구리 577-2번지	14,593.6	
산5	27,592.1	1	장구리 579-1번지	7,948.7	
		2	장구리 579-2번지	5,656.4	
		3	장구리 579-3번지	3,955.0	
		4	장구리 579-4번지	4,264.2	
		5	장구리 579-5번지	5,767.8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m ²)	번호	위치	면적(m ²)	
산6	118,604.0	1	장구리 582-1번지	6,700.1	산업단지의 탄력적인 용지공급 및 분양을 위하여 획지분할 가능 (최소획지규모 : 3,000㎡ 이상)
		2	장구리 582-2번지	11,225.7	
		3	장구리 582-3번지	20,298.6	
		4	장구리 582-4번지	10,348.4	
		5	장구리 582-5번지	10,629.1	
		6	장구리 582-6번지	13,185.3	
		7	장구리 582-7번지	13,831.3	
		8	장구리 582-8번지	14,232.7	
		9	장구리 582-9번지	7,535.7	
		10	장구리 582-10번지	7,613.0	
		11	장구리 582-12번지	3,004.1	
산7	133,996.4	1	장구리 578-1번지	11,369.9	
		2	장구리 578-2번지	20,448.5	
		3	장구리 578-3번지	9,936.0	
		4	장구리 578-4번지	11,009.5	
		5	장구리 578-5번지	14,500.1	
		6	장구리 578-6번지	17,090.6	
		7	장구리 578-7번지	24,142.8	
		8	장구리 578-8번지	14,213.1	
		9	장구리 578-9번지	5,640.4	
		10	장구리 578-10번지	5,645.5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m ²)	번호	위치	면적(m ²)	
산8	210,976.3	1	장구리 583-1번지	16,555.7	산업단지의 탄력적인 용지공급 및 분양을 위하여 획지분할 가능 (최소획지구모 : 3,000m ² 이상)
		2	장구리 583-2번지	23,865.2	
		3	장구리 583-3번지	23,878.1	
		4	장구리 583-4번지	8,100.2	
		5	장구리 583-5번지	9,945.8	
		6	장구리 583-6번지	13,418.1	
		7	장구리 583-7번지	7,964.1	
		8	장구리 583-8번지	15,491.7	
		9	장구리 583-9번지	35,727.9	
		10	장구리 583-10번지	24,117.4	
		11	장구리 583-11번지	18,112.8	
		12	장구리 583-12번지	13,799.3	
산9	121,740.7	1	장구리 580-1번지	12,964.4	
		2	장구리 580-2번지	8,544.0	
		3	장구리 580-3번지	9,004.2	
		4	장구리 580-4번지	15,674.4	
		5	장구리 580-5번지	28,092.7	
		6	장구리 580-6번지	24,350.5	
		7	장구리 580-7번지	23,110.5	
산10	66,852.0	1	장구리 584-1번지	23,139.4	
		2	장구리 584-2번지	3,870.1	
		3	장구리 584-3번지	9,283.1	
		4	장구리 584-4번지	20,433.7	
		5	장구리 584-5번지	10,125.7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m ²)	번호	위치	면적(m ²)	
산11	20,240.9	1	장구리 585-1번지	10,085.7	산업단지의 탄력적인 용지공급 및 분양을 위하여 획지분할 가능 (최소획지규모 : 3,000m ² 이상)
		2	장구리 585-2번지	10,155.2	
연1	18,371.7	1	장구리 586-1번지	3,553.6	
		2	장구리 586-2번지	7,482.6	
		3	장구리 586-3번지	7,335.5	
연2	49,004.2	1	장구리 587-1번지	12,233.5	
		2	장구리 587-2번지	12,236.5	
		3	장구리 587-3번지	12,268.4	
		4	장구리 587-4번지	12,265.8	
주1	2,371.2	1	장구리 599번지	2,371.2	
주2	2,210.8	1	장구리 584-6번지	2,210.8	
주3	3,525.0	1	장구리 585-3번지	3,525.0	

■ 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m ²)	번호	위치	면적(m ²)	
산1	17,288.6	1	장구리 575-1번지	8,340.0	산업단지의 탄력적인 용지공급 및 분양을 위하여 획지분할 가능 (최소획지규모 : 3,000㎡ 이상)
		2	장구리 575-2번지	2,569.4	
		3	장구리 575-3번지	6,379.2	
산2	18,129.3	1	장구리 576-1번지	18,129.3	
산3	108,437.1	1	장구리 581-1번지	43,503.2	
		2	장구리 581-3번지	10,823.0	
		3	장구리 581-4번지	10,822.5	
		4	장구리 581-5번지	10,480.4	
		5	장구리 581-6번지	10,707.2	
		6	장구리 581-7번지	11,050.2	
		7	장구리 581-8번지	11,050.6	
산4	59,352.0	1	장구리 577-1번지	44,758.4	
		2	장구리 577-2번지	14,593.6	
산5	27,592.1	1	장구리 579-1번지	7,948.7	
		2	장구리 579-2번지	5,656.4	
		3	장구리 579-3번지	3,955.0	
		4	장구리 579-4번지	4,264.2	
		5	장구리 579-5번지	5,767.8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m ²)	번호	위치	면적(m ²)	
산6	118,604.0	1	장구리 582-1번지	6,700.1	산업단지의 탄력적인 용지공급 및 분양을 위하여 획지분할 가능 (최소획지규모 : 3,000m ² 이상)
		2	장구리 582-2번지	11,225.7	
		3	장구리 582-3번지	20,298.6	
		4	장구리 582-4번지	20,977.5	
		5	장구리 582-6번지	13,185.3	
		6	장구리 582-7번지	13,831.3	
		7	장구리 582-8번지	14,232.7	
		8	장구리 582-9번지	7,535.7	
		9	장구리 582-10번지	7,613.0	
		10	장구리 582-12번지	3,004.1	
산7	133,996.4	1	장구리 578-1번지	11,369.9	
		2	장구리 578-11번지	3,966.9	
		3	장구리 578-13번지	6,539.9	
		4	장구리 578-2번지	9,941.7	
		5	장구리 578-3번지	9,936.0	
		6	장구리 578-4번지	11,009.5	
		7	장구리 578-5번지	14,500.1	
		8	장구리 578-6번지	17,090.6	
		9	장구리 578-7번지	24,142.8	
		10	장구리 578-8번지	14,213.1	
		11	장구리 578-9번지	5,640.4	
		12	장구리 578-10번지	5,645.5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m ²)	번호	위치	면적(m ²)	
산8	210,976.3	1	장구리 583-1번지	16,555.7	산업단지의 탄력적인 용지공급 및 분양을 위하여 획지분할 가능 (최소획지규모 : 3,000m ² 이상)
		2	장구리 583-2번지	26,471.8	
		3	장구리 583-3번지	21,271.5	
		4	장구리 583-4번지	8,100.2	
		5	장구리 583-5번지	9,945.8	
		6	장구리 583-6번지	13,418.1	
		7	장구리 583-7번지	7,964.1	
		8	장구리 583-8번지	15,491.7	
		9	장구리 583-9번지	35,727.9	
		10	장구리 583-10번지	24,117.4	
		11	장구리 583-11번지	18,112.8	
		12	장구리 583-12번지	13,799.3	
산9	121,740.7	1	장구리 580-1번지	12,964.4	
		2	장구리 580-2번지	8,544.0	
		3	장구리 580-3번지	9,004.2	
		4	장구리 580-4번지	15,674.4	
		5	장구리 580-5번지	28,092.7	
		6	장구리 580-6번지	24,350.5	
		7	장구리 580-7번지	23,110.5	
산10	66,852.0	1	장구리 584-1번지	23,139.4	
		2	장구리 584-2번지	3,870.1	
		3	장구리 584-3번지	9,283.1	
		4	장구리 584-4번지	20,433.7	
		5	장구리 584-5번지	10,125.7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m ²)	번호	위치	면적(m ²)		
산11	20,240.9	1	장구리 585-2번지	20,240.9	산업단지의 탄력적인 용지공급 및 분양을 위하여 획지분할 가능 (최소획지규모 : 3,000m ² 이상)	
연1	18,371.7	1	장구리 586-1번지	3,553.6		
		2	장구리 586-2번지	7,482.6		
		3	장구리 586-3번지	7,335.5		
연2	49,004.2	1	장구리 587-1번지	12,233.5		
		2	장구리 587-2번지	12,236.5		
		3	장구리 587-3번지	12,268.4		
		4	장구리 587-4번지	12,265.8		
주1	2,371.2	1	장구리 599번지	2,371.2		
주2	2,210.8	1	장구리 584-6번지	2,210.8		
주3	3,525.0	1	장구리 585-3번지	3,525.0		

※ 단, 관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산1-2)

나) 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1 ~ 산11	용 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부대시설 포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부대시설 포함) - 산4-1획지, 산4-2획지, 산7-10획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에 한하여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율	◦ 350% 이하		
	높 이	◦ 높이 : 최고 4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게 남행배치가 되도록 권장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색 채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사용 금지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	◦ 제한 없음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1류 이하 도로 : 건축한계선 2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대로3류 이상 도로 : 건축한계선 3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연1 ~ 연2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의한 연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율	◦ 350% 이하	
	높 이	◦ 높이 : 최고 4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색 채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사용 금지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		◦ 제한 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 대로변 3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 주3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허용(주차전용건축물은 불허),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및 「완주군 주차장조례」에 의하며 비율은 부지면적의 10% 미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이하	
	용적율	◦ 10% 이하	
	높 이	◦ 최고 1층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구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를 반영할 것. ◦ 차량출입구간은 가각부로부터 5~10m, 인접대지와 5m 이상 이격하여 지정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에 따름 ◦ 주차장은 완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할 것 	
경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건축물에 의한 대형입면은 시각적 분절 등의 방법으로 위압감을 감소시키고 미관을 향상시킬 것 ◦ 시각적으로 혐오감이 있는 이미지의 공장시설은 가급적 녹지를 통하여 차폐 	권장사항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위 치	경미한 사항	비 고
완주 테크노밸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항 및 시행령 제25조 4항,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 ◦ 완주 군계획조례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사항 	

12. 산업단지계획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제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13.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1필지		14,213.1	14,213.1						
1	봉동읍 장구리	578-8	장	14,213.1	14,213.1	(주)뷰텍 모터스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68				

14.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완주군청(일자리 경제과(063-290-249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43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안 부칙 제2조)
- 나. 인용 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예산과 협의(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감사관, 인권담당관
- 라. 비용추계서: 첨부
- 마. 입법예고: 2022. 8. 26. ~ 9. 1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전화 : 063-280-2278, 팩스 : 063-280-27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담당자(전화 : 063-280-2278)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959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 ----- 2027년 12월 31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p>

붙임1

비용추계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라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 개정 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지출	공공예금이자 및 예탁금원금회수	2,487,015	2,507,238	2,527,737	2,548,513	2,569,574	12,640,075
	예탁금이자	130,312	132,085	133,881	135,702	137,547	669,528
	예치금회수	5,068,548	5,137,480	5,207,350	5,278,170	5,349,953	26,041,502
	소계	7,685,875	7,776,803	7,868,968	7,962,385	8,057,074	39,351,105
수입	사업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예치금	6,685,875	6,776,803	6,868,968	6,962,385	7,057,074	34,351,105
	소계	7,685,875	7,776,803	7,868,968	7,962,385	8,057,074	39,351,105

* 이율 추계 : 1.36% 예상

4. 재원조달 계획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7,685,875	7,776,803	7,868,968	7,962,385	8,057,074	39,351,105
합 계		7,685,875	7,776,803	7,868,968	7,962,385	8,057,074	39,351,105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과

7. 참여자 및 작성자 :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윤동일(280-2278)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천원)

구분	사업내용	2022년 예산	이 후 연간예산 (5개년)	비 고
합계		6,000,541	31,041,502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 사업내용 : 남북간 협력사업 추진 ◦ 사업방법 : 사업별 도, 시군, 민간기관 시행 	1,000,000	5,000,000 ('23 : 1,000,000) ('24 : 1,000,000) ('25 : 1,000,000) ('26 : 1,000,000) ('27 : 1,000,000)	
예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억원 예탁('21년 결산기준) - 3년거치 5년상환('20년부터 5년간 14억원씩 상환) 	-	-	
예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예금 이자 예치(이율 1.36% 예상) 	5,000,541	26,041,502 ('23 : 5,068,548) ('24 : 5,137,480) ('25 : 5,207,350) ('26 : 5,278,170) ('27 : 5,349,953)	

* 21년 결산기준 기금조성액 107억 중 42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중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3

일부개정 조례안(전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전라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전라북도(이하“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관광·축제·농업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8. 9>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3조(구성)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9. 8. 9., 2022. 3. 11.>

1. 문화·학술·체육·경제·관광·축제·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외의와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
5.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홍보사업
7.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행사(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
8.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5조(관리·운용)①제3조에 따른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22. 3. 11.>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3. 11.>

- 1. 기금운용계획 수립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계공무원)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
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실·국장
-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사무관

제7조(보고 등)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
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
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
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8조(설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
다.

-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 4.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 3.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제11조(임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⑧ 재해, 기근 등 긴급한 사안발생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에 곤란한 경우 간사가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안건을 회의에 올리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실무기획단)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무기획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연구를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제17조(업무위탁 및 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3. 11.>

- 1.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홍보사업
- 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행사지원(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단체 또는 법인에 지원하는 기금 사업의 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9. 8. 9>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1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 삭제 <2019. 8. 9>]

부칙<전부개정 2015. 2. 27 조례395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0. 12 조례4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9 조례4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071호, 2022.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호, 2022.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44호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라북도의 미래비전 설계, 주요 시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도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단의 설치, 기능, 구성 (안 제2조~제4조)

- 자문단은 2개 이상 전국·도내 단위 등으로 둘 수 있으며, 도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 등을 자문하고, 각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위원의 임기, 단장의 직무 (안 제5조~제6조)

- 임기는 2년이고, 도지사의 임기종료 시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되며, 각 단장은 소속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함

다. 자문단의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 (안 제7조~제9조)

- 각 자문단의 정책 자문과 연구·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설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자료 협조 및 의견 청취 등 (안 제10조~제11조)

- 도지사는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제8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 감사관, 인권담당관, 예산과, 법무행정과, 자치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라. 입법예고 : 2022. 8. 26. ~ 9. 15.(20일간)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9.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정책기획관 (전화 : 063-280-3925, FAX : 063-280-2119, 메일 : jjlove1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정책기획관 정책관리 담당자 문의 (063-280-3925)

5.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비전 설계, 주요 시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도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 도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 도내 단위 등으로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 1. 도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
- 2. 주요 역점시책의 추진방향 및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
- 3.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여론의 청취·전달
-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각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행정, 법조계, 학계, 기업·경제, 언론계, 문화,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임기종료 시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① 각 자문단의 단장은 소속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에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이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위원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각 자문단은 정책자문과 연구·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자문단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자문단의 실무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0조(자료 협조 및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자료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자료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3. 작성자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은정(063-280-3925)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14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8. 26.

전라북도지사

- 1. 허가번호 : 제2022-6450000-001-0003호
- 2.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 3. 대표자 : 이중하
- 4. 소재지 :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60
- 5.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6. 설립허가일 : 2022. 8. 19.
- 7. 목적사업
 - 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수립 및 정책 건의
 - 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다.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라.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육성과 보호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의 수탁운영사업
 - 마.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및 지원
 - 바. 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 아. 이 협의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 자. 그 밖의 이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1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8월 26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부처님세상
2.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24
3. 대 표 자 : 백준기
4. 설립목적 : 본회는 불타의 가르침을 따라 자리이타하는 보살의 삶을 널리 선양하며, 불교의 대중화, 수행화, 생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5. 허가번호 : 제2015-13호
6. 허가연월일 : 2015년 11월 12일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20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6.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7-1-전라북도-63호
2. 단체명칭 : 김제시여성자원활동센터
3.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신평길 168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조 금 자
 - 생 년 월 일 : 1946. 4. 24.
 - 주 소 : 전북 김제시 순동 356
5. 주된 사업
 -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그룹별 활동,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김 공 순	조 금 자	

7. 허가(변경)일자 : 2022. 8. 19.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22호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업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전라북도지사

1. 압류대상 : 자동차 1대(94구79**)
2. 대상업체 : 주식회사 대성엔지니어링
 - 대표자 : 김종*(생년월일 : 66. 09. **.)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7, 301호
3. 위반내용 : 전기공사업 변경사항 기한 내 미신고
4. 관련법규 : 전기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5. 부과금액 : 과태료 금1,030,000원(금일백삼만원)
6. 압류년월일 : '22. 08. 03.
7. 압류해제방법 : 과태료 전액 납부 확인 시 압류해제
8. 납부방법 : 전라북도 세외수입통장(농협 301-0031-9042-11)
9. 문의사항 :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과(063-280-3235).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26호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전라북도지사

1. 특구 개요

- 가. 명 칭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나. 위 치 : 전북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및 군산 국가산업단지 등
 다. 면 적 : 총 184.45km² 및 도로 101.6km
 라. 지정기간 : 2020.8.1. ~ 2024.7.31.(4년)
 마. 지정목적 : 탄소 융·복합 제품의 제조 및 효과성·안전성 검증을 통한 탄소 산업의 신시장 창출
 바. 실증특례 : ①탄소복합재 소형 선박제조 및 운항 실증, ②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③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제조 및 소방 특장차 실증



2.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열람

- 가. 열람기간 : 2022.8.26.(금) ~ 2022.9.26.(월) / 32일간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열람장소 :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탄소바이오산업과
 다. 방 법 : 계획(안) 방문 열람 * 전자파일, 복사본 제공불가

3.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세부변경(안)

- 변경(추가)사항 : 위치 및 면적 추가, 위치도 및 지형도 추가

구 분	특구면적 및 운행노선거리 변경		비 고
기 존	합계 면적	합계 거리	
	184,446,986m ²	101.6km	
변 경	합계 면적	합계 거리	
	184,469,874m ²	102.8km	

구분	위치	면적/거리	위치도·지형도	비고(사유)
1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18	22,888m ²	 <p style="text-align: center;"><완주소방서></p>	소방차 완주소방서 이관을 위한 특구면적 추가
2	완주소방서 ↔ 완주산업단지	1.2km	 <p style="text-align: center;">이동거리 : 1.2km</p>	완주산업단지 운행실증을 위한 이동노선 추가

4. 기타사항

- 가.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나. 제출기한 : 2022.9.26.(월) 18: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유효)
- 다. 제출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탄소바이오산업과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063-280-3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서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기와 같이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33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이리중앙늘봄)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8월 26일

1. 허가 번호 : 제2022-32호
2. 법인 명 : 사단법인 이리중앙늘봄
3.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4, 2층
4. 대표자 : 윤석노
5. 허가연월일 : 2022. 8. 22.
6. 설립 목적 :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문화예술 격차 해소 도모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40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의견제출통지)을 영업장 소재지로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련 내용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6일
전라북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지남종합건설 (대표 : 김*) / 건축공사업(14-0600)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0, 엘에이치 3동 2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미달 ※(제)건설산업정보센터-1-17027(2022.07.27.)호 통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					
5. 처분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최종 행정처분 내용은 감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의견 제출	제출처	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주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번호	280-4455
		전자우편주소	guku9900@korea.kr		fax	280-3419
	제출기한	2022년 9월 15일까지				

전주시 고시 제2022-153호

전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평화3택지 제1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북 고시 제332(1998. 7. 23.)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평화3택지 제1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 주 시 장
2022년 8월 26일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116	평화3택지 제1공원	어린이 공원	평화동2가 889-6	2,755.4	-	2,755.4	전북 고시 제332호 1998. 7. 23.	

②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총괄조서

시 설	시설내용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건축바닥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기 정	증·감	변경	기 정	증·감	변경		
총 계		2,755.4		2,755.4								기정시설률 52.37%
시설면적 소계		1,443	증 83	1,526.0		증 30	30		증30	30		변경시설률 55.38%
도로 및 광장	소 계	213		213								
	도로및광장	213		213								
조경 시설	소 계	291		291								
	계류	291		291								
휴양 시설	소 계	343		343								
	휴게쉼터	343		343								

유희 시설	소 계	495		495							
	놀이터	495		495							
운동 시설	소 계	101		101							
	다목적운동장	101		101							
편익 시설	소 계		증83	83		증30	30		증30	30	
	편의공간		증83	83							1개소 신설
녹지	소 계	1,312.4	감83	1,229.4							기정 녹지율 47.63%
	녹 지	1,312.4	감83	1,229.4							변경 녹지율 44.62%

나. 공원조성계획 시설별 결정(변경) 세부조서

시 설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2,755.4	-	2,755.4								기정 시설률 52.37%
시설면적 소계			1,443.0	증 83	1,526								변경 시설률 55.38%
도로 및 광장	소 계		213		213								
	1	도로	100		100								
	2	광장A	113		113								
조경 시설	소 계		291		291								
	3-1	계류	291		291								
휴양 시설	소 계		343		343								
	4-1	원형광장	198		198								
	4-2	휴게광장	145		145								
	4-3	정자	-		-								
	4-4	파고라	-		-								
	4-5	등의자	-		-								
	4-6	원형의자	-		-								
4-7	앉음벽	-		-								1개소	
유희 시설	소 계		495		495								
	5-1	어린이놀이터	495		495								
	5-2	조합놀이대A	-		-								
	5-3	조합놀이대B	-		-								
	5-4	조합놀이대C	-		-								
	5-5	그네	-		-								
	5-6	시소	-		-								
	5-7	흔들의자	-		-								
운동 시설	소 계		101		101								
	6-1	체력단련시설	101		101								
	6-2	운동기구											
편익 시설	소 계						증30	30		증30	30		
	7-1	편의공간		증83	83								
	7-2	공중화장실					증30	30		증30	30		1개소
녹지	소 계		1,312.4	감83	1,229.4								기정 녹지율 47.63%
	녹 지		1,312.4	감83	1,229.4								변경 녹지율 44.62%

다.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공원시설 도로 결정 총괄조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2	32.5	100							2	32.5	100
소로	2	32.5	100							2	32.5	100

2) 공원시설 도로 결정 세부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이용형태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2.5	100				
기정	소로	소 계			32.5	100				
기정	소로	3류	1	2	15	30	진입로	북측구역계	5-1어린이놀이터	
기정	소로	3류	2	4	17.5	70	진입로	서측구역계	2. 광장A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전주시 공고 제2022-2053호

전주 도시계획시설(소공원:용머리여의주마을생태숲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열람공고

전주시 고시 제2022-34(2022. 3. 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소공원:용머리여의주마을생태숲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주 시 장
2022년 8월 26일

□ 실시계획 작성의 요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35-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소공원:용머리여의주마을생태숲공원)
 - 명 칭 : 용머리 여의주마을 생태숲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A=2,182.42㎡ (산책로, 운동시설, 도서관 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주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2년 12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총 계					3,025	2,182.42							
1	완산	서완산동1가	산116	임	269	265.83	전주시						
2	완산	서완산동1가	산117-1	임	172	152.52	전주시						
3	완산	서완산동1가	37	전	340	340	전주시						
4	완산	서완산동1가	35-1	전	521	521	전주시						
5	완산	서완산동1가	31-3	도	422	48.31	전주시						
6	완산	서완산동1가	33-1	대	34	34	송0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47길 00, 000호					
7	완산	서완산동1가	33-2	대	79	79	이0여 탁0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000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80-00	김0홍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44-00	근저당권자		
8	완산	서완산동1가	36	대	114	112.95	전주시						
9	완산	서완산동1가	산118-7	임	75	67.5	전주시						
10	완산	서완산동1가	132	대	73	73	전주시						
11	완산	서완산동1가	132-2	도	22	22	전주시						
12	완산	서완산동1가	132-1	대	139	139	전주시						
13	완산	서완산동1가	124-3	도	147	2.86	전주시						
14	완산	서완산동1가	132-4	도	33	33	전주시						
15	완산	서완산동1가	131-2	도	6	6	전주시						
							박0산	전주시 서완산동1가 00					
							형0호	전주시 서완산동1가 00					
							이0준	울산광역시 염포동 344 00동 000호					
							조0백	전주시 서완산동1가 00					
							이0석	전주시 서완산동1가 00					
							전0구	전주시 서완산동1가 00					
							송0옥	전주시 서완산동1가 00					
배0용	전주시 서완산동1가 00												
장0안	전주시 중화산동1가 00												
김0춘	전주시 서완산동1가 00												
윤0길	전주시 서완산동1가 00												
16	완산	서완산동1가	131-1	대	166	166	전주시						
17	완산	서완산동1가	134-2	대	195	31.37	전주시						
18	완산	서완산동1가	35	전	218	88.08	전주시 홍0성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00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열람기간 :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전주시 도시공간혁신과(063-281-5323),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18)
- 열람내용 : 전주 도시계획시설(소공원:용머리여의주마을생태숲공원)사업 실시
계획 작성 내용
- 의견서제출 :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장소 또는
우편, 팩스(063-281-5289, 063-281-2615), 이메일(jjsg0810@korea.kr,
kwg1203@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134호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8월 26일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170	선양동 905-8 소3-23	미원동 68 소3-24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3	25	6	국지도로	170	선양동 905-8 소3-23	미원동 68 소3-24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가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소로3-25	소로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각 변경 - 4.5m → 18.6m(증 41.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3-25호선 종점 가각부 면적 확장을 위한 경미한 변경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2 - 174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89)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지곡동 329-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89호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8월 26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29-2번지 외 12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2) 명 칭 : 지곡동 332-1번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중로 2-189호선) 사업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중로 2-189호선 : B=16~17.5m, L=147m, A=823m²(폭원확장구간 개설)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9, 201-2호
 - 2) 사업시행자 성명 : (주)디앤아이 대표 정성화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군산시 지곡동	329-2	전	86	1	군산시		
2		484-1	도	614	26	국(농수산부)		
3	군산시 나운동	1495	도	572	161	국(농수산부)		
4		191-15	전	383	38	군산시		
5		산236-4	임	417	45	군산시		
6	군산시 지곡동	산104-2	도	1,020	27	국(국토교통부)		
7		산104-3	임	1,188	286	군산시		
8		329-6	전	894	1	군산시		
9		329-3	전	4	4	군산시		
10		329-1	전	635	82	㈜대신자산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1		329-5	전	1,099	54	㈜대신자산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2		329-4	전	28	28	군산시		
13		산104	임	2,279	70	국(산림청)		
계	13필지			9,219	823			

정읍시 공고 제2022-11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정읍시 국도1호선(용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 “보상계획”에 대하여 의견이(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26.

정 읍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2년 10월 1일 ~ 2024년 12월 30일

도로의 명칭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도로구역) 위치	사업내용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국도1호선	도로사업 / 국도1호선 (용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공사	전북 정읍시 구룡동	○연장 : 감속차로0.399km 가속차로0.458km ○폭원 : 5.0m ○면적 : 20,568㎡	정읍시장/ 정읍시 충정로 234 (수성동 440-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후지~풍월선(군도3호)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열람장소, 열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국도1호선(용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공사	정읍시청 건설과	2022. 8. 26. ~ 2022. 9. 9. (15일간)

※ 사업구간의 위치도 및 관련 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기간 중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4. 보상협약에 관한 사항

- 보상시기 : 2022. 9. 15. ~사업완료시까지(예산범위내 보상 실시)
- 보상방법 :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
-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보상액산정 → 손실보상협약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 ※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5. 열람 및 의견(이의신청) 제출

- 제출기간 : 2022. 8. 26. ~ 2022. 9. 9.(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 편입토지 총괄표

구분	계		구성비 (%)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면적 (㎡)	필지 수		면적 (㎡)	필지 수	면적 (㎡)	필지 수	면적 (㎡)	필지 수	면적 (㎡)	필지 수	면적 (㎡)	필지 수
합계	20568	39	100	18014	34	15818	22	2025	10	171	2	2554	5
구거	1926	11	9.36	1926	11	338	4	1588	7				
담	16463	15	80.04	14044	11	13873	9			171	2	2419	4
도로	1605	12	7.80	1470	11	1033	8	437	3			135	1
전	574	1	2.80	574	1	574	1						

② 편입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1	정읍시 구룡동	699-14	구거	1190		3		국(건설교통부)		
2	정읍시 구룡동	713-6	도로	2739		6		국(건설교통부)		
3	정읍시 구룡동	570-3	도로	199		74		국(건설부)		
4	정읍시 구룡동	570-5	답	984		247		국(건설교통부)		
5	정읍시 구룡동	570-1	답	407		149		정*형	인천 계양구 작전동 388-2 동보아파트 ****	
6	정읍시 구룡동	699-5	구거	8436		35		국(건설교통부)		
7	정읍시 구룡동	699-17	구거	997		299		국(건설교통부)		
8	정읍시 구룡동	710	도로	753		32		국(건설교통부)		
9	정읍시 구룡동	710-2	도로	159		29		국(건설교통부)		
10	정읍시 구룡동	839	구거	1362		45		국(농림부)		
11	정읍시 구룡동	839-1	구거	671		286		국(농림부)		
12	정읍시 구룡동	778	답	2473		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정읍시 구룡동	779	답	1763		11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관교로 98(포일동)	
14	정읍시 구룡동	781	답	6295		2366		국(국토교통부)		
15	정읍시 구룡동	840-1	도로	1140		434		국(농림부)		
16	정읍시 구룡동	841	구거	2370		2		국(농림부)		
17	정읍시 구룡동	843	도로	920		2		국(농림부)		
18	정읍시 구룡동	842-1	구거	985		295		국(농림부)		
19	정읍시 구룡동	809	답	18688		8743		국(건설교통부)		
20	정읍시 구룡동	841-3	구거	239		122		국(농림부)		
21	정읍시 구룡동	536-3	답	2693		479		국(국토교통부)		
22	정읍시 구룡동	535	전	3533		574		국(국토교통부)		
23	정읍시 구룡동	841-1	구거	653		328		국(농림부)		
24	정읍시 구룡동	840-2	도로	2893		1		국(농림부)		
25	정읍시 구룡동	785-1	답	59		59		국(건설교통부)		
26	정읍시 구룡동	782	답	859		400		국(건설교통부)		
27	정읍시 구룡동	783-1	답	1463		1176		국(건설교통부)		
28	정읍시 구룡동	784-1	답	338		338		국(건설교통부)		
29	정읍시 구룡동	783	답	390		390		정읍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30	정읍시 구룡동	784	답	1831		1831		정읍시		
31	정읍시 구룡동	839-2	구거	4349		510		국(농림부)		
32	정읍시 구룡동	714	도로	382		82		국(건설교통부)		
33	정읍시 구룡동	714-2	도로	12		12		국(건설교통부)		
34	정읍시 구룡동	544-4	도로	1062		637		국(건설부)		
35	정읍시 구룡동	541-6	도로	743		135		한*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로 ***	
36	정읍시 구룡동	541-1	답	1391		49		한*호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북로 ***	
37	정읍시 구룡동	541-3	도로	153		161		국(건설부)		
38	정읍시 구룡동	541-5	답	228		65		국(건설교통부)		
39	정읍시 구룡동	658-6	구거	447		1		국(건설교통부)		

남원시 공고 제2022-176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인 『남원 옛 명지각 문화시설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8월 26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옛 명지각 문화시설 조성사업(한옥체험)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금동 45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1,38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6.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8.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면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동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 권외 권리 명세	
합 계					1,383	1,383	-		-	-	-	
1	남원시 금동		45	대	1,131	1,131	-	남원시 외 2인	-	-	-	
2	"		52	대	202	202	-	남원시 외 2인	-	-	-	
3	"		44-2	대	50	50	-	남원시 외 2인	-	-	-	

<편입 지장물 조서>

연번	건물소재지		지목	건 축 물					비고		
	시·동	지번		건축물구조	건축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합 계					581.2	-		-	-	-	
1	남원시 금동	45외	대	목조	261.3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외 2인				
2	"	"	대	목조	293.9	"	남원시 외 2인				
3	"	"	대	목조	26	"	남원시 외 2인				

완주군 고시 제2022-67호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완주군 운주K벨리 골프장 조성을 위한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의 결정(변경)(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2년 8월 26일

1.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가.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	체육 시설	운주 골프장 (9홀)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5-2번지 일원	322,847	-	322,847	완주군 고시 제2008-390호 (2008.08.18)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61	운주면 산북리 140-6	운주면 산북리 65-20	일반 도로	-	완주군 고시 제2008-390호 (2008.08.18)	면적변경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61	운주면 산북리 140-6	운주면 산북리 65-20	일반 도로	-		

다.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호선	소로 2-2호선	◦ 도로 면적변경 - 17,307㎡ → 17,449㎡ 증)142㎡	◦ 도로 부지 분할측량결과 반영으로 인한 면적변경

2.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